



# UEE Seminar Series

Hosted by School of Urban & Environmental Engineering

##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Speaker: 나진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기술센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목적은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정보를 등록, 심사, 평가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고를 사전 예방으로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화평법은 2013년 0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05월 22일 공포되었고, 2015년 01월 01일 시행되었다.

화평법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 제조 등의 보고 (b) 화학물질의 등록 (c)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신고 (d)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준수 및 승인 (e)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화평법'이 시행되어 이 후 2015년 8월에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하였고 2017년 12월에 등록 자료가 최초로 제출이 되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요구 되어지는 제출 자료 중 화학물질 사용의 전 과정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는 202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출 대상에 해당하며, 화평법 시행(2015. 1. 1.) 이후 톤수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절차는 크게 ①유해성확인 ②노출량-반응평가/종민감도분포 평가 ③노출평가 ④위해도 결정이다.